

심 사 보 고 서

| | |
|------------|----|
| 의 안 번 호 | 23 |
|------------|----|

2022년 8월 5일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I 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: 2022. 7.13.

2. 제 안 자 : 서울특별시장

3. 회부일자 : 2022. 7.14.

4. 상정일자 : 제31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

○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(2022. 7. 26.)

○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(2022. 7. 29.)

- 안건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

- 원안가결

Ⅱ. 제안설명의 요지 (기획조정실장)

- 의안번호 제23호 「2022년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변경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※ 회전기금

-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지출되며 타 기관을 위해 지출된 경우 지출된 원가를 다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 총액은 감소됨이 없이 지출, 상환 및 재지출이 이루어져서 운용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기금

※ 하수도사업 회전기금

- (설치근거) 지방공기업법 제39조
- (설치목적) 하수도 사업의 장래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익잉여금 등을 적립하면서, 적기에 투자사업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

- 본 안건은 2021회계연도 결산 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적립 및 예치금 증가 반영을 위하여 재무활동 금액의 148% 규모인 296억 4천 6백만 원을 변경하는 것입니다.

-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

- 순세계잉여금 적립으로 수입계획 중 '전입금'을 당초 200억 원에서 296억 4천 6백만 원 증가한 496억 4천 6백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.
- 이에 따라 지출계획 중 '예치금'을 당초 200억 원에서 148% 규모인 296억 4천 6백만 원 증가한 496억 4천 6백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.

Ⅲ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엄지운)

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제23호, **2022년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**은 2022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 위원회인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

2.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

(1) 제안이유

가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*에 따라 2022년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*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(2) 주요내용

가.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「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」 여유재원 296억 46백만원을 전입받아 예치금으로 지출하고자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함

나. 운용규모 : 496억 46백만원 (당초계획 대비 296억 46백만원 증가)

| <수입계획> (단위 : 백만원) | | | | <지출계획> (단위 : 백만원)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구분 | 당초계획 (A) | 변경계획 (B) | 증감 (B-A) | 구분 | 당초계획 (A) | 변경계획 (B) | 증감 (B-A) |
| 계 | 20,000 | 49,646 | 29,646 | 계 | 20,000 | 49,646 | 29,646 |
| 전입금 | 20,000 | 49,646 | 29,646 | 예치금 | 20,000 | 49,646 | 29,646 |

○ 수입계획 변경

- 전입금 수입 : 29,646백만원 증가 (20,000 → 46,646백만원)

- 「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」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중 여유재원 296억 46백만원 수입

○ 지출계획 변경

- 예치금 : 29,646백만원 증가 (20,000 → 46,646백만원)

- 「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」 전입금 296억 46백만원 수입에 따라 예치금 증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3. 검토내용

-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'21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(733억 9,100만원)중 여유재원 296억 4,600만원이 동 기금으로 전출되어
 - 수입계획중 **전입금**(296억 4,600만원)에 반영하고,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지출계획중 **예치금**(296억 4,600만원)에 반영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

〈표 3-1〉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(단위 : 백만원, %)

| 정책사업 / 단위사업 / 세부사업 | 당 초 (A) |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(B) | 증 감 (C=B-A) | 증 감 륜 (D=C/A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지출합계 | 20,000 | 49,646 | 29,646 | 148.2 |
| 재무활동 (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) | 20,000 | 49,646 | 29,646 | 148.2 |
| 보전지출 (하수도사업회전기금) | 20,000 | 49,646 | 29,646 | 148.2 |
| 예치금 | 20,000 | 49,646 | 29,646 | 148.2 |

※ 자료근거 : ①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중 하수도사업 회전기금, ②2022년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재구성

- 관련 법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,
 -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출계획중 정책사업인 **재무활동(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)**의 당초 지출계획보다 148.2%, 296억 4,600만원을 증액하여 변경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임

- 아울러 동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, 전입금을 예치금으로 지출하여 기존에 운용중인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의 조성액 규모를 확대하려는 것으로
 - 동 기금의 설치근거인 관련 조례에 명시된 기금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예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

- 다만, 관련 법령은 “정책사업”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,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동 기금은 운용계획 변경안을 “예치금”으로 기재하고, 당초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인 **재무활동**으로 기재하지 않고 있음
 - 지난 '22년 4월에도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처럼 의회에 제출된 다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정책사업명을 임의로 기재한 사례가 지적된 바,
 -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에도 정책사업명을 편의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의회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는데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

- 관련 법은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,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,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, 분야별 자원배분계획 등이 포함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음
 - 「2022~2026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」은 지난해 12월, 예산안이 수정 의결 되었고, '22년 4월에도 '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수정의결된 바 있으며 금번 제311회 임시회의 의안으로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인하여 재정규모에 차이가 발생할 것이 확실시되어 「2022~2026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」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

- 그러나 관련 법은 제44조의2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중
기지방재정계획을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어 기금운용계획 변
경안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

- 또한 관련 법과 관련 기준은 또한 예산안이 의결된 이후라도 중기지방재정
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기금운용계획변경 결과를 즉각적으로
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연동시켜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

○ 다만, 관련 기준이 관련 법 제33조제11항의 단서를 근거로 불가피한 사유
가 있는 경우에 추경예산에 먼저 반영하고, 다음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
반영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

- 서울시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결과와 중기지방
재정계획이 상당기간 불일치되는 결과를 유발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

- 더욱이 「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」의 경우, 당초
지출계획보다 296억 4600만원 증액하여 지출계획한 것으로 동 기금의
예치금은 결국 하수도 사업에 대한 장래 투자재원으로 소요될 수밖에 없어
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수정요인이 불가피하게 발생될 것으로 사료됨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생략」

VI.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

1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2. 조정소위원회 심사경과

1) 소위원회 구성

- 일 자 : 2022. 7. 27(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)
- 장 소 :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(의회별관 2층)
- 위원구성 : 제11대 1기 예결위원장단 선임
 - 위 원 장 : 이성배(주택균형개발)
 - 부위원장 : 김영옥(보건복지), 강동길(주택균형개발)

※ 금번 회기에는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
위원장단에게 조정을 위임하였음

2) 소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

○ 제1차 소위원회

- 일 시 : 2022. 7. 27(수) 16:00 ~ 20:00
- 장 소 :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
- 참 석 : 소위원회 위원
- 내 용 : 예산안 등 조정

○ 제2차 소위원회

- 일 시 : 2022. 7. 28(목) 10:00 ~ 22:00
- 장 소 :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
- 참 석 : 소소위원회 위원
- 내 용 : 예산안 등 조정

○ 제3차 소위원회

- 일 시 : 2022. 7. 29(금) 10:00 ~ 14:00
- 장 소 :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
- 참 석 : 소소위원회 위원
- 내 용 : 예산안 등 조정

VII. 부대의결 : 「생략」

VII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(2022. 7. 29.)

2022년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| | |
|----------|----|
| 의안 번호 | 23 |
|----------|----|

제출년월일 : 2022년 7월 13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가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*에 따라 2022년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*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주요내용

가.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「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」 여유재원 296억 46백만원을 전입받아 예치금으로 지출하고자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함

나. 운용규모 : 496억 46백만원 (당초계획 대비 296억 46백만원 증가)

<수입계획>

(단위 : 백만원)

| 구분 | 당초계획 (A) | 변경계획 (B) | 증감 (B-A) |
|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계 | 20,000 | 49,646 | 29,646 |
| 전입금 | 20,000 | 49,646 | 29,646 |

<지출계획>

(단위 : 백만원)

| 구분 | 당초계획 (A) | 변경계획 (B) | 증감 (B-A) |
|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계 | 20,000 | 49,646 | 29,646 |
| 예치금 | 20,000 | 49,646 | 29,646 |

○ 수입계획 변경

- 전입금 수입 : 29,646백만원 증가 (20,000 → 49,646백만원)

- 「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」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중 여유재원 296억 46백만원 수입

○ 지출계획 변경

- 예치금 : 29,646백만원 증가 (20,000 → 46,646백만원)

- 「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」 전입금 296억 46백만원 수입에 따라 예치금 증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